

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영 제2조제23항제2호에서 “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

1. 법 제2조제9호의2가목에 따른 신용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의 계좌에 기록된 이체·결제내역 및 거래 상대방명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)
2. 제1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 및 거래 상대방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신용정보주체의 계좌에 기록한 정보

제23조의3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조회·분석 업무를 제공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
가. 제3조의3제2항 각 호의 정보

나. 만 19세 미만 개인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

10. 만 19세 미만의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를

제공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행위

가. 만 19세 미만인 개인신용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 본인신용정보 관리 서비스 이용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행위

나. 만 19세 미만인 개인신용정보주체와 관련되어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·제공하는 행위

1)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예금성 상품

2)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

3)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

4) 그 밖에 1)부터 3)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상품과 유사한 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융상품

부 칙

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의3(본인신용정보관리업) (생략) <u><신설></u></p>	<p>제3조의3(본인신용정보관리업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영 제2조제23항제2호에서 <u>“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</u></p> <p>1. <u>법 제2조제9호의2가목에 따 른 신용정보로서 신용정보주 체의 계좌에 기록된 이체·결 제내역 또는 거래 상대방명 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 칭을 말한다)</u></p> <p>2. <u>제1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신 용정보주체 및 거래상대방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신용정보 주체의 계좌에 기록한 정보</u></p>
<p>제23조의3(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의 행위규칙 등) ① 영 제18조 의6제1항제11호에서 “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</p> <p>1. ~ 8. (생략) <u><신설></u></p>	<p>제23조의3(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의 행위규칙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 9. 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</u></p>

<신 설>

당하는 정보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조회·분석 업무를 제공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
가. 제3조의3제2항 각 호의 정보

나. 만 19세 미만 개인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

10. 만 19세 미만의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행위

가. 만 19세 미만인 개인신용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 이용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행위

나. 만 19세 미만인 개인신용정보주체와 관련되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·제공하는 행위

1)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예금성 상품

<p>② ~ ④ (생략)</p>	<p>2) 「<u>여신전문금융업법</u>」 제 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<u>직불카드 및 선불카드</u></p> <p>3) 「<u>전자금융거래법</u>」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<u>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</u></p> <p>4) 그 밖에 1)부터 3)까지의 <u>규정에 따른 금융상품과 유사한 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융상품</u>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----	--